

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(동부) **심 사 보 고**

2001. 11. 10.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1년 10월 24일

○ 회부일자 : 2001년 10월 25일

다. 상정일자 : 제1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○ 2001. 11. 8 :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
심의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김 동 윤)

가. 제안이유

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써
 ⇒ 출산 전후 60일에서 출산 전후 90일로 연장 허가

3. 검토보고 요지

(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한 상 혁)

○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여성공무원의 출산에 따른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와 모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

동 조례 제23조 제2항, 제3항, 제4항에 여자공무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바,

여자는 나이가 어리건 많건 상관없이 사용하고,
 여성은 성적으로 여성임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나이를 먹은 여자를 이르는 말로서,

근로기준법 제72조(임산부의 보호) 및 제73조(육아시간)의 규정 중 여자근로자를 여성근로자로 개정하였을 뿐 아니라 각종 법령의 여자를 여성으로 정정하는 추세에 있어,

동 조례 제23조의 각 항의 『여자공무원』을 『여성공무원』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,

출산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업무공백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수정안요지

가. 수정이유

근로기준법 및 각종 법령의 개정 추세에 따라 여자공무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규정을 여성공무원으로 수정하려는 것임.

나. 수정 주요골자

- “여자공무원” ⇒ “여성공무원”으로 수정함.

(안 제23조 제2항, 제3항, 제4항)

7. 심사결과 : 수정안가결

8. 소수 의견요지 : “없음”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-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 제2항 중 “60일”을 “90일”로 한다.

제23조 제2항, 제3항, 제4항 중 “여자공무원”을 “여성공무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) 제2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한다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3조(특별휴가) ① (생략)</p> <p>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.</p> <p>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.</p> <p>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.</p> <p>⑤내지⑩ (생략)</p>	<p>제23조(특별휴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임신중의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.</p> <p>③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.</p> <p>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.</p> <p>⑤내지⑩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(출산휴가 확대에 따른 적용례) 제2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한다.</p>

근거법령 발취

지방공무원법

유10행수 1

제59조(위임규정)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유10행수 5

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제안년월일 : 2001. 11. 8.

제안자 : 김준석 의원의외

1. 수정이유

근로기준법 및 각종 법령의 개정 추세에 따라 여자공무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규정을 여성공무원으로 수정하려는 것임.

2. 수정 주요골자

- “여자공무원” ⇒ “여성공무원”으로 수정함.
(안 제23조 제2항, 제3항, 제4항)

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3조 제2항, 제3항, 제4항 중 “여자공무원”을 “여성공무원”으로 한다.

안 부칙 제2항 중 “여자공무원”을 “여성공무원”으로 한다

수정안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3조(특별휴가) ① (생략)</p> <p>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.</p> <p>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.</p> <p>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.</p> <p>⑤내지⑩ (생략)</p>	<p>제23조(특별휴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임신중의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.</p> <p>③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.</p> <p>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.</p> <p>⑤내지⑩ (현행과 같음)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(출산휴가 확대에 따른 적용례) 제2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(출산휴가 확대에 따른 적용례) 제2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한다.</p>